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0790217
신청일	2026-08-20 08:27:52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9-201(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070-8770-5659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은평경찰서 수사 6팀 김순옥 경감에게
내용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서울 은평구 진관 3로 15-45 피의자: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서울시 위촉 위원들 제목: [형법] 제355조(배임), 제32조(종범) 위 피의자 4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은평뉴타운 10단지-1 아파트 관리소장 임상현외 6인의 공범으로 추가 고소한다(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피의 사실

1. 서울시 소속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아님에도 특정 직무 수행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과 청렴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반 사항을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제5항 제 8호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 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지난 2월말 경,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 관리비 비리 신고 후,
6개월 가까이 질질 끌어온 은평구청이 4일간의(8.18-21일) 감사한다하여
18일 오후 3-4시, 감사현장에(입주자 대표회의실) 가보니,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피의자 4명이
임상현이 제공한 자료들을 토대로 각자 노트북을 들여다 보고 있길래,

아파트 비리는 관리비 도둑질이고 그 도둑질의 핵심수단은 정부와 국토부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 법규를 제정"하며 총력을 기울여 지양하는 "수의 계약"인데,
(1) 관리소장 임상현은 2023년 9월 부터 2026년 2월까지 단 한번도 수의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위반), 202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위반)
(2) 고소인이 2023년 9월 개설하여 임상현이 동게시판에 올려놓은 게시물을 스캔해서 올려놓은 카페가(https://cafe.naver.com/eunpyeong10) 그 입증 증거이니 확인하라며 주소 기재한 종이를 건네 주었고
(3) 동게시판에 공개하지도 않은 수의 계약서 사본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서대로 거래가 집행되었는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에 규정된, 거래대금 입증 자료, 3가지(세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카드 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4) 회계담당 한명희(?)는 나가고, 다른 3명의 위원들은 수의 계약서 사본에 대한 아파트 동별 게시판 공개 여부 판단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범죄자 임상현이 제공한 자료들만으로 판단하겠다고 고집하며 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2+3×5를 계산함에 있어 곱셈의 우선 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오답을 얻듯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의 최우선 순위는 관리비 도둑질 조사임은 명백하고 그 핵심 수단 수의 계약 위법성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3. 이러한 피의자들의 감사 작태는
"도둑놈이 훔친 물건 뒤로 숨기고 빈손을 내보이며 훔친 거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하나마나한 개판 위법 감사"에 의한 국민세금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 범죄 은폐하는 종범 행위인 것이다

이런 돌대가리/사기꾼이나 다름 없는 위촉 위원들 척결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라

	2026.8.19 김명호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피민원인 근무처명	은평구주택비리 서울시 감사 위촉위원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8-0779024
접수일	2026-08-20 08:27:52
담당자(연락처)	김선희 (02-350-1430)
처리예정일	2026-08-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8-27 17:49:2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수사지원팀장 경감 김선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8-07902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 내용은 '업무상배임죄 공범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민원내용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 등 위반에 혐의를 두고 접수(접수번호 : 2026-6662, 접수일 : 26.08.27.)한 후, 담당부서인 수사과 수사6팀에 배당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경찰서 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수사지원팀장 경감 김선희 (02-350-14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붙임 1. 민원신청서.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김선희

평가 했는데, 삭제되어 다시 올린다
==========
22일 접수된 서류를 김순옥에게 27일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5일씩 지연하고 자빠지고 나서도
아직 넘기지도 않고 미래에 하겠다는 거냐?

너도 공범으로 참여하고 싶어 안달하는 거냐?
니 죄목에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추가되는 거는 알고 있냐?
너 같은 돌대가리가 알 리가 없어 특별히 알려준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질문	답변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